

의안번호	제 350 호
의 결 연 월 일	2009년 4월 일 (제 279회)

**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발 의 자	임 현 의원외 7인
발의 연월일	2009년 4월 15일

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임 현 의원 대표발의)

의 번 호	350
---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9. 4. 15.
제 출 자 : 임 현, 최미애, 김광수,
이범윤, 이종호, 정윤숙,
최광옥, 최재옥

1. 제안이유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복지 지원 사업 신청대상을 독립유공자에서 국가유공자까지 범위를 확대하고, 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도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복지지원 신청대상을 독립유공자에서 국가유공자까지 범위 확대 (안 제7조)
- 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정비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명 중 “예우 및”을 “예우와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특 별히”를 “특별히”로 하고, “적용대상요건에”를 “적용대상 요건에”로 하며, 같은 호 나목 중 “수호 또는”을 “수호와”로 하고, 같은 호 라목 중 “생명 또는”을 “생명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유족 또는 가족으로서”를 “유가족으로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지원과”를 “지원에”로 한다.

제3조 본문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하고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5조 본문 중 “위한”을 “위하여”로 하고, “협력 하여야”를 “협력하여야”로 한다.

제6조제1호 중 “중요행사시 순국선열 및”을 “중요행사 시 순국선열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위로·격려 및”을 “위로·격려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”를 “위하여 실시하는 각종 보훈문화 행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국가 또는”을 “국가와”로 하며, “사적지 및”을 “사적지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개최시”를 “개최 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7호 중 “발간시”를 “발간 시”로 한다.

제7조 본문 중 “범위내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”를 “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공공시설안에”를 “공공시설에”로 하며, “위한”을 “위하여”로 하고, “허가 또는”을 “허가하거나”로 하며, “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”을 “독립유공자·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”으로 한다.

제8조 본문 중 “범위 안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권익신장 및”을 “권익신장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위한 독립운동발상지 및”을 “위하여 독립운동 발상지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회원위문 및”을 “회원위문,”으로 하며, “위한”을 “위하여 실시하는”으로 한다.

제9조 본문 중 “선양 및”을 “선양,”으로 한다.

제1조 본문, 제2조제2호, 같은 조 제3호, 제3조 제목, 같은 조 본문 및 제6조 제목 중 “예우 및”을 각각 “예우와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가보훈기본법」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<u>예우</u>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가보훈기본법」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<u>예우와</u>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1. “희생·공헌자”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<u>특별히</u>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<u>적용대상요건에</u>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	1. “희생·공헌자”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<u>특별히</u>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<u>적용대상 요건에</u>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가.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	가.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
나. 국가의 <u>수호 또는</u> 안전보장	나. 국가의 <u>수호와</u> 안전보장
다.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	다.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
라. 국민의 <u>생명 또는</u>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	라. 국민의 <u>생명과</u>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
2. “국가보훈대상자”라 함은 희생·공헌자와 그 <u>유족 또는 가</u>	2. “국가보훈대상자”라 함은 희생·공헌자와 그 <u>유가족으로서</u>

현 행	개 정 안
<p><u>족으로서</u>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<u>예우 및 지원</u>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.</p> <p>3. “국가보훈관계 법령”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<u>예우 및 지원과</u>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.</p> <p>제3조(<u>예우 및 지원대상</u>)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(이하 “단체”라 한다)로 한다.</p> <p>제5조(도민의 책무) 모든 도민은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</p> <p>제6조(<u>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</u>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희생·공헌자의 예우 및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도가 개최하는 <u>중요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</u> 대한</p>	<p>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<u>예우와 지원</u>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.</p> <p>3. “국가보훈관계 법령”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<u>예우와 지원에</u>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.</p> <p>제3조(<u>예우와 지원대상</u>) 이 조례에 따른 <u>예우와 지원대상</u>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(이하 “단체”라 한다)로 한다.</p> <p>제5조(도민의 책무) 모든 도민은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</p> <p>제6조(<u>예우와 공훈 선양사업</u>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희생·공헌자의 예우 및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도가 개최하는 <u>중요행사 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등에</u> 대한</p>

현 행	개 정 안
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	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
2. 도가 개최하는 중요행사에 희생·공헌자를 초청하고, 초청된 희생·공헌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	2. 도가 개최하는 중요행사에 희생·공헌자를 초청하고, 초청된 희생·공헌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
3. 국가보훈대상자의 <u>위로·격려</u> 및 모범자의 포상	3. 국가보훈대상자의 <u>위로·격려</u> <u>와</u> 모범자의 포상
4.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	4.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실시하는 각종 <u>보훈문화 행사</u> 의 지원
5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·재정적 지원	5. <u>국가와</u>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<u>사적지나</u>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·재정적 지원
6. 보훈관련 행사 <u>개최시</u> 지역출신 희생·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소개	6. 보훈관련 행사 <u>개최 시</u> 지역출신 희생·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소개
7. 인물록 등 <u>발간시</u> 지역출신 희생·공헌자의 공적재재 등	7. 인물록 등 <u>발간 시</u> 지역출신 희생·공헌자의 공적재재 등
제7조(복지지원 등) 도지사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국가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	제7조(복지지원 등) 도지사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국가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1. 도가 설치·관리하는 <u>공공시설</u> 안에 식료품·사무용품 등 일상	1. 도가 설치·관리하는 <u>공공시설</u> 에 식료품·사무용품 등 일상 생

현 행	개 정 안
<p>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.</p> <p>2. 도가 설치·운영("위탁시설"을 포함한다)하는 시설물의 입장료, 주차료 감면</p> <p>제8조(단체지원) 도지사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<u>범위 안에서</u> 지원할 수 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회원의 <u>권익신장</u> 및 보훈 시설 건립·개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 2. 호국·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<u>독립운동발상지</u> 및 전적지 순례 사업 3. 자원봉사사업과 <u>회원위문</u> 및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<p>제9조(민간의 참여조성) 도지사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<u>선양</u>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p>활용품의 판매를 <u>위하여</u>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<u>독립유공자·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</u>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.</p> <p>2. 도가 설치·운영("위탁시설"을 포함한다)하는 시설물의 입장료, 주차료 감면</p> <p>제8조(단체지원) 도지사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<u>범위에</u>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회원의 <u>권익신장과</u> 보훈 시설 건립·개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 2. 호국·보훈정신 함양을 <u>위하여</u> <u>독립운동 발상지와</u> 전적지 순례 사업 3. 자원봉사사업과 <u>회원위문</u>,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<p>제9조(민간의 참여조성) 도지사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<u>선양</u>,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

관련법령 발췌

□ 국가보훈기본법

- 제5조 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,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

- 제6조 (등록 및 결정)** ①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(이하 "보훈심사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다. 다만, 독립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③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후 또는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후에 독립유공자가 사망하거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제16조의2 (생업지원) ①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·사무용품·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제6조에 따라 등록·결정된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.

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6조 (등록 및 결정) ①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,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, 제5조 또는 제73조의2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,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한다.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, 제13호 및 제14호의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2.6>

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,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할 때에는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(이하 "보훈심사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 다만,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68조의2 (생업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·사무용품·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등록·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공단체의 범위, 매점의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. [본조신설 2008.3.28]